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083

발의연월일: 2021. 11. 2.

발 의 자:최혜영·김민철·남인순

조오섭 · 김남국 · 양향자

박홍근 • 이은주 • 서영석

강선우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·제도의 조사 및 연구, 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운영지침 수립,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한국수어 통역센터: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 게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2조의2(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1.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・제도의 조사 및 연구
  - 2.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센터(이하 "한국수어 통역센터"라 한다)의 운영지침 수립
  - 3.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
  - 4. 한국수어 통역에 대한 교육·홍보 및 한국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 력 양성
  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수어 통역 관련 업무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

- 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	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
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5. 한국수어 통역센터: 의사소
	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• 언어
	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 및
	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62조의2(중앙한국수어 통역센
	<u>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</u>
	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
	여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를
	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	1.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정책
	•제도의 조사 및 연구
	2.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
	국수어 통역센터(이하 "한국
	수어 통역센터"라 한다)의 운
	영지침 수립
	3. 한국수어 통역센터 및 유관
	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

- 4. 한국수어 통역에 대한 교육

   ·홍보 및 한국수어 통역 관

   런 전문인력 양성
- 5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한국수어 통역 관련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 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 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 앙한국수어 통역센터의 설치ㆍ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